

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

(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)(개정 2021.11.04.)

-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 - 2.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·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

-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제공자"라 한다)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-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멸실·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
 - 3.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-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 - 1.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.
 - 2.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·감사·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.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·부패·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·제출·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.
 - 4.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·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4일간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한다.

- ⑥ 제5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은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